

선	기관위원장
람	

제1607호 2021. 7. 5(월)

## 차 례

###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7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1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7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75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1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76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2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77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2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3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79호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3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80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3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81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4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4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83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4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54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2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5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2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58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77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공고 ----- 6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85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 6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11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76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정책담당관 [032-560-4146]**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7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72호

###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권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 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체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소속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행정기관 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2장 위원회의 구성·직무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할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 직책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3항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과반수 위원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구청장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6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직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14조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 3.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 4.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의 교류·협력
- 5. 그 밖에 위원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결정한 활동

제9조(직무관할) 제8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구 및 그 소속기관 등
-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 3.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본인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본인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직무범위를 각기 달리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구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상호간의 관계) 위원회는 합의제로 운영하며 상호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③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 및 구청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련

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한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련 대상기관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관계부서 및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7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의회에 관한 사항
  6.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기타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8조(시정·권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와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의견제출 기회 부여)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9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처리결과 통보)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4장 위원회의 운영지원 등

제24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7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73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 장애인 등”(이하 “장애인”이라고 한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실종”이란 장애인이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위치추적기”란 배회감지기 등을 포함한 기기 착용자 위치를 파악하는 제반 전자 장치를 말한다.

5. “시설장애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고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실종 예방 대책
2.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
3. 장애인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2. 서구지역 시설장애인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

2.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실종 경험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당사자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4. 지역 사회 내 민간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법인 또는 단체가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청장은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7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74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 (이하 “아이사랑꿈터”라 한다)란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으로 인천광역시 가정육아활성화 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가정육아지원시설을 말한다.
4.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에 아이사랑꿈터를 설

치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에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중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이하 “공동육아나눔터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을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동육아나눔터를”을 “공동육아나눔터 등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을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육아나눔터는”을 “공동육아나눔터 등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을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을”을 “등의 운영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공동육아나눔터”를 각각 “공동육아나눔터 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활성화”를 “등의 활성화”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 등)”을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동육아나눔터를”을 “공동육아나눔터 등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동육아나눔터”를 “공동육아나눔터 등”으로 한다.

제9조 중 “운영 사항”을 “등의 운영 사항”으로, “운영에”를 “등의 운영에”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내에 아이사랑꿈터를 설치할 경우 해당 사업예산의 범위에서 아파트 관리주체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7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75호

### 인천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 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

으며,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교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3.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4.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결과 자료 요청)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7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76호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5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찰”을 “성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및 문화도시 추진단”을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및 문화도시지원센터”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여성, 청년, 문화다양성 분야 전문가

제18조의 제목 “(문화도시추진단 설치 및 운영)”을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구문화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를 “서구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교육기관 또는 연구 기관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문화도시추진단의 기능)”을 “(문화도시지원센터의 기능)”으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추진단”을 “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주민 주체의 다양한 문화공동체 구성과 창의적 활동에 대한 지원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5장(제21조부터 제3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문화도시조성기금 관리 및 운용

제21조(문화도시조성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 한 사업 추진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조성기 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2조(기금의 존속 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문화도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2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재난 위기시 문화기획자, 예술인, 청년 등의 문화인들의 구호와 활동 안  
전망 구축 지원

2. 관내 동 단위의 회복문화마을 조성 지원

3.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4. 민간 문화공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5. 문화도시 아카이브 및 조사 연구 활동 지원

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지원

제2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2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  
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에 기금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⑥ 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 계획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제28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금에 대한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문화도시 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문화도시 정책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문화도시조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조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2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복지문화국장 그 밖의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 1명 및 감사 2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3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33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도시담당으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36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36조(중전의 제21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로 한다.

제37조(중전의 제22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18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7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77호

###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의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서구체육회장(이하 “서구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장”을 “서구체육회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7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78호

###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제3조 관련)

시설명	기능	위치	비고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다목적 운동장, 주민운동시설, RC경기장 등 체육활동 - 체육분야 강습 프로그램	서구 청라동 7-17	
가좌배수지 상부 실내 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	서구 가좌동 1-11	
마전 다목적체육관	-게이트볼장, 다목적체육관	서구 마전동 905-6,7	

## [별표 2]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및 휴관일(제10조 관련)

대 상 시 설	개방시간	휴 관 일	기타
조례 제3조 및 [별표 1]에 해당하는 체육시설	<p style="text-align: center;">&lt;평일&gt; 06:00 ~ 22:00</p> <p style="text-align: center;">&lt;주말(토,일) 또는 공휴일&gt; 09:00 ~ 2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날, 추석 연휴</li> <li>●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li> <li>●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li> </ul>	

## [별표 3]

□ 체육시설 사용료 (제11조 관련)

사용종목(시설)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배드민턴장	2시간(1코트) 1일 1회 1인	1,000	-
게이트볼장	2시간 1일 1회	1,000	
테니스장	2시간(1코트) 1일 1회 1인	1,000	
풋살장	2시간(1면) 1일 1회	5,000	
족구장	2시간(1면) 1일 1회 1인	1,000	
농구장	2시간 1일 1회 1인	1,000	
RC경기장	2시간 1일 1인	1,000	
다목적 체육관 운동장 주민운동시설	실내 대관 2시간	5,000	
	실외	무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7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79호

###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홍보함”을 “교육·홍보·지원함”으로 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본청 및 직속기관,”을 “본청, 직속기관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경제적 유인을 제공·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불가피하다고”를 “피할 수 없다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금지”를 “금지, 다회용품 지원 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교육과 홍보)”를 “(교육, 홍보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회용품 사용 업소에 다회용품 무상대여 사업
4. 무상대여한 다회용품 회수 및 세척에 관한 사업
5. 다회용품 이용자에 대한 보상 마일리지, 캐시백 등 제공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7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80호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순환자원 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거점 수거센터인 순환자원 회수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순환자원 회수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구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무게 측정 및 관리
2. 재활용가능자원 수거대장 관리
3. 주민참여 홍보 등 관련 업무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7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81호

###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간의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

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판로촉진) 구청장은 서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0조(공동사업)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7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82호

###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구 여성기업의 임원으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구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구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제4조(지원활동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제5조(자금지원 우대) 구청장은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및 구매 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7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8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과약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

원시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경제인단체가 구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에 따른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구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7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83호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2.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영업장소의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① 구청장은 서구 행정재산을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 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의 경우 선착순 모집 및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사용·수익 허가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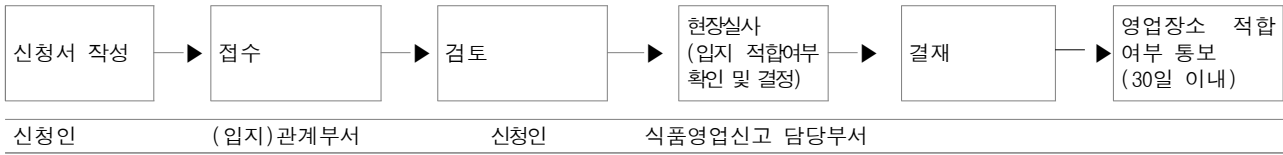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 ② 구청장은 취업취약계층(「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을 말한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처리절차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7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84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일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이용 마일리지운영과 수당지급 등 일정”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124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5.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87번길 6 외 1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7.5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1-7-5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51-37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87번길 6 (가좌동)	20090922	가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03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101번길 5 (오류동)	20090922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598-2	인천광역시 서구 신동길 68 (금곡동)	20090922	신동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4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598-2	인천광역시 서구 신동길 70 (금곡동)	20090922	신동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1-7-5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23번안길 5 (서남동)	건물말소	20090706	서달로123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48번길 52 (마전동)	건물말소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48번길 32-8 (마전동)	건물말소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48번길 32-10 (마전동)	건물말소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48번길 32-14 (마전동)	건물말소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48번길 32-12 (마전동)	건물말소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48번길 32-11 (마전동)	건물말소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48번길 32-13 (마전동)	건물말소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48번길 36-5 (마전동)	건물말소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48번길 32-9 (마전동)	건물말소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125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A4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 인천검단신도시 AA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주)유승종합건설(대표 민광옥)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A4블록
  - 나. 대지면적 : 57,122.00m<sup>2</sup>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54,591.8211m<sup>2</sup> (지하3층, 지상25층)
  - 라.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10개동 93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마. 사업비 : 346,520,492천원
4. 사업기간 : 2018. 10. 23. ~ 2021. 9. 18.
5. 변경사항(세부내역 붙임 참조)
  - 가. 단지배치도, 실내외 재료마감표 및 평면도 등
  - 나. 단위세대 창호도, 부대시설 및 조경개요 등

##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세부내역 1부. 끝.

# (인천 검단신도시 AA4BL 유승한내들 공동주택) 사업계획(10차변경)승인신청 변경내용

## 1. 공 통

변경목록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참조)
<b>등명칭 변경</b>					
1	주동 동 명칭 변경	검단신도시 블록별 단지번호 지정 현황 반영 (공문 : 주택과-9812)	주동 동 명칭 변경	101동~110동	1201동~1210동

## 2. 건 축

변경목록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참조)	
<b>설계개요</b>						
1	설계개요 자전거보관소 관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3-7-4 자전거보관소 설치기준 적용	법적규정 및 설치내용 변경	법적규정 : 281대 설치내용 : 300대	법적규정 : 420대 설치내용 : 420대	
<b>단지배치도</b>						
2	단지 외 도로 횡단보도 형태변경	교통 종합개선안도 반영	단지 외 도로 횡단보도 형태변경 등	변경전 도면	변경후 도면	
	근린생활시설-2 옥외계단 형태 변경	전면공지 확보	옥외계단 형태 변경	옥외계단	옥외계단+벽체난간	
	주민회의실 출입구 진입동선 설치	진입동선 확보	진입동선 추가 설치	-	진입동선 추가 설치	
<b>실내외 재료마감표(아파트)</b>						
3	바닥, 걸레받이, 벽체 마감재 상황	지하3층~지하층 승강기홀 마감재 상황조정	바닥마감 변경	지정테라조, 지정마감	지정석재	경미한사항변경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5항5호 내장재료 및 외장 재료의 변경 (동등이상)
			걸레받이마감 변경	세라민	지정타일	
			벽체마감 변경	무늬코트	지정타일	
	발코니, 대피공간 걸레받이 마감재 추가	마감재 상황	걸레받이 마감재 추가	-	걸레받이페인트	
주동 지붕 마감 변경	무근콘크리트 내구성 증대	지붕 마감재 변경 (지붕과 옥탑지붕 별도 구분)	무근콘크리트 /쇠흙손마감	무근콘크리트 /노출우레탄		
<b>주동평면도</b>						
4	주동 피로티 내부 자전거 보관소 위치 변경 (102, 103, 104, 105, 107, 108, 109동)	이용자 편의 확보	피로티 내부 위치변경	-	피로티 내부 위치변경	
<b>단위세대 창호도</b>						
5	단위세대 실외기실 창호 크기 변경	인접창호 높이와 동일 적용 (모델하우스 높이 반영)	84A, 107A	12 X 22.5 / PW	124 X 22 / PW	
			84B, 84C, 92, 94B, 107B	20.5 X 22.5 / PW	20.5 X 22 / PW	
			94A	12 X 22.5 / PW	12 X 22 / PW	
<b>실내외 재료마감표(지하주차장, 부대시설)</b>						
6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바닥, 천장 마감재 세부기재 및 마감재 상황	마감재 상황	지하주차장 바닥마감 변경	페인트	에폭시페인트	경미한사항변경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5항5호 내장재료 및 외장 재료의 변경 (동등이상)
				시멘트모르타르 /테라조타일	시멘트모르타르 /석재마감	
			근린생활시설 바닥마감 변경	지정바닥재	비닐게타일	
			어린이집 현관 바닥마감 변경	바닥타일	석재마감	
숙직실 천장마감 변경	속직실 천장마감 변경	석고보드 위 천정지	지정색(무석면텍스)			
<b>부대시설</b>						
7	근린생활시설-2 외부계단 형태 변경	이용자 접근성 및 안전성 고려, 전면공지 추가 확보	전면도로 레벨극복에 따른 외부계단 형태 변경	옥외계단	옥외계단+벽체난간	
8	헬스케어 실외기실 DA 지상부 그릴창 추가	실외기실 급배기량 확보를 위해 개구부 추가	13 X 10.5 / AG 그릴창 측면 1개소 추가	-	1개소 추가	
9	어린이집 화장실 기구 변경	서류청 가정보육과 화장실 보완요청 반영	화장실 대변기 2개소 추가	대변기 2개소	대변기 4개소	
			욕조 삭제 및 샤워기 설치	욕조	샤워기	

3. 조 경

변경목록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참조)
<b>조경 개요</b>						
1	식재수량 변경	배치도 변경에 따른 변경	교목	2,111(3,114)주	2,112(3,196)주	
			상록교목	624(885)주	668(974)주	
2	생태면적 변경	배치도 변경에 따른 변경	생태면적 변경	23,299.18m <sup>2</sup> (40.78%)	22,947.85m <sup>2</sup> (40.17%)	
<b>시설물 관련</b>						
3	시설물 수량 변경	배치도 변경에 따른 변경	외부웬스 표기	-	1식	

4. 토 목

변경목록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참조)
1	구조물계획평면도	택지공원 현황 및 계획리벨에 따른 변경	설치 위치이동	1호	1호위치변경	
		안정성 확보 및 조경리벨변경	2,3,8,9호 높이 변경 및 위치변경	2호:추가 3호:0.3~2.3 8호:0.3~1.3 9호:0.6~1.5	2호:0.3~1.3 3호:0.3~1.3 8호:0.3~1.0 9호:0.6~2.6	
2	조경석전개도	안정성 확보 및 조경리벨변경	8,9호 높이 변경	8호:0.3~1.3 9호:0.6~1.5	8호:0.3~1.0 9호:0.6~2.6	
			2호 조경석 추가 3호 조경석 변경	없음 0.3~2.3	H-0.3~1.3 H-0.3~1.3	
3	우수계획평면도	집수정 수량오기	집수정 수량의 개소 오기	24EA(오기전) 42EA(오기후)	47EA	
		집수정 연결관 수량 오기 및 추가(추가내용 원활한 배수)	집수정 연결관 오기 및 추가	410m(오기전) 628m(오기후)	713m	
		유지관리 상승 및 수량오기	빗물받이 자재 및 규격변경, 개소 오기	410x510 (PE) 126EA(오기전) 107EA(오기후)	300x400 (콘크리트) 120EA	
		자하층 상부의 원활한 배수유도	빗물받이 연결관 변경	D200	D150~D200	
		원활한 배수유도	원형수로관 D300	L=1,240	L=1,683	
		자하층 상부의 더 원활한 배수 유도	원형수로관 D150~D200 추가	없음	L= 116	
		상등	원형수로관 집수정 460x460 추가	998x460	998x460, 460x460(추가)	
출입구 배수 추가(단지 진출입부)	횡단측구 추가	130m(오기전) 106m(오기후)	116m			
4	오수계획평면도	기계 옥외배관 변경 및 유지관리 상승(오수받이)	수량변경	소형맨홀 63EA 소형맨홀연결관 787m 오수1호맨홀 47EA 오수받이 12EA (PE) 오수받이연결관 130m	소형맨홀 D600, 51EA 소형맨홀연결관 690m 오수1호맨홀 49EA 오수받이 11EA (콘크리트) 오수받이연결관 151m	
5	오수종단면도	기계 옥외배관 변경	D900맨홀 추가	없음	SM.13-1	
			1131 호선 추가	없음	1131 호선 추가	
		계획고 변경	계획고 변경으로 인한 맨홀높이 변경	오수종단면도(4)	오수종단면도(4)	
6	상세도	유지관리 상승 및 보행자의 편의증대	뚜껑자재표기 추가	스틸그레이팅 or 기타그레이팅	스틸그레이팅 or 디자인그레이팅	
		자하층 상부의 더 원활한 배수 유도	원형수로관 D150~D200 추가	없음	추가	
		자하층 상부의 더 원활한 배수 유도	원형수로관 집수정 460x460 추가	998x460	998x460, 460x460(추가)	
		유지관리 상승	오수받이 변경(자재 및 규격변경)	410x510, (PE)	300x400, (콘크리트)	
7	상수계획평면도	계량기 위치 변경	수량변경	상수관 D50 L=19m	상수관 D50 L=68m	

변경목록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참조)
8	포장계획평면도	조경 생태면적 변경에 따른 포장 수량 변경	수량변경	아스콘포장, 1,522m <sup>2</sup>	아스콘포장, 1,554m <sup>2</sup>	
				소형고압블럭, 12,422m <sup>2</sup>	소형고압블럭, 9,673m <sup>2</sup>	
				투수블럭, 2,113m <sup>2</sup>	투수블럭, 4,095m <sup>2</sup>	
				보차도경계석(직선),L=175m (아스콘포장)	보차도경계석(직선),L=192m (아스콘포장)	
				보차도경계석(곡선),L=102m (아스콘포장)	보차도경계석(곡선),L=124m (아스콘포장)	
				보차도경계석(직선),L=2,371m (보차혼용)	보차도경계석(직선),L=2,360m (보차혼용)	
				보차도경계석(곡선),L=1,486m (보차혼용)	보차도경계석(곡선),L=1,390m (보차혼용)	
				재료분리경계석, L=67m	재료분리경계석, L=148m	
9	각종 계획평면도	건축 및 조경 베이스 변경 (주민회의실 출입구 진입동선 설치 등)	건축 및 조경 베이스 변경	변경전 도면	변경후 도면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177호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20-64호(2020.4.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사업명: 공공공지 조성사업】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기획담당관 ☎560-476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산199-13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 명칭: 공공공지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공공공지: A=1,755m<sup>2</sup>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5.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8.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서구청 본관4층 도시기획담당관
-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9.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1. 7. 5. ~ 2021. 7. 19. (14일간)
-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열람장소 직접제출 또는 우편)

※ 우편 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도시기획담당관 (우편번호22726)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공공공지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석남동	203-15	임야	217	217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 , **동 **호 (만수동, 현**)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인천영업부)	근저당권	
2	석남동	203-11	전	101	101	인천광역시 서구					
3	석남동	434	도로	566	29	국 (국토교통부)					
4	석남동	205-10	답	159	159	인천광역시 서구					
5	석남동	산119-13	임야	877	877	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_**				
6	석남동	산119-14	임야	329	329	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종로 ** (원미동)				
7	석남동	206-11	전	29	29	주식회사 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 ** (역삼동, 포**)				
8	석남동	206-4	도로	1295	14	인천광역시 서구					



# 사 업 계 획 서

## 1. 사업의 목적

- 도로(소로2-30호선) 해제 구간에 주민의 휴식과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공지를 조성하고자 함

## 2. 사업시행자 :

- 인천광역시 서구청

##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명 칭 : 공공공지 조성사업

## 4. 규 모

-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 1,755㎡
- 사업시행면적 : 사업면적 1,755㎡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면적 (㎡)	금회실시계획인 가면적(㎡)	향후실시계획 인가면적(㎡)	최 초 결정일
최초	공공공지	공공공지	1,755	1,755	-	2020.4.6. (인천광역시 서구청시 64호)

## 5. 사업시행자 주소 및 명칭

- 가.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 나. 명 칭 : 인천광역시 서구청

## 6.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

- 가. 착 공 : 인가일
- 가. 준공예정 : 2025년 12월 31일

## 7. 제 원 조 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공 사 비	200	용역비, 폐기물처리비 포함
보 상 비	2,000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계	2,200	

##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용지조서, 지장물 조서 및 별첨도면 참고”

## 9. 공사 세부개요

- 시 설 물 공
  - 데크계단
- 식 재 공
  - 상록교목 : 스트로브잣나무 27주
  - 낙엽교목 : 느티나무 외 6종 70주
  - 낙엽관목 : 산철쭉 외 6종 11,263주
- 부 대 공
  - 1식

인천광역시서구청고 제2021-1185호

##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시 제2020-213(2020.12.1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 시설【경관녹지,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사업】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주민(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개발과 ☎560-476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 서구 원창동 213-6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 명칭 :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353m<sup>2</sup>
- 규모 : L=42m, B=7.8m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식회사 정원도시개발 대표이사 박정서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268(왕길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실시계획 인가일 ~ 2021. 06. 30.
- 변경 : 실시계획 인가일 ~ 2022. 0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 권리	
계				3,555	3,555	-	353	353	-	-	-				
1	원창동	213-60	대	2,373	2,300	감)73	73	-	감)73	김*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번길 **,*동 ***호(간석동, *****)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지상권 설정	지적분할
	원창동	213-65	대	-	73	증)73	-	73	증)73	김*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번길 **,*동 ***호(간석동, *****)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지상권 설정	
2	원창동	213-61	대	137	137	-	137	137	-	주식회사 **도시개발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왕길동)				
3	원창동	220-5	잡	954	902	감)52	52	-	감)52	국 (기획재정부)					지적분할
	원창동	220-8	잡	-	52	증)52	-	52	증)52	국 (기획재정부)					
4	원창동	220-6	잡	91	91	-	91	91	-	주식회사 **도시개발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왕길동)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 서구청 본관4층 도시개발과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위 치 도

---

□ 위치도



# 사업계획서

---

## 사업 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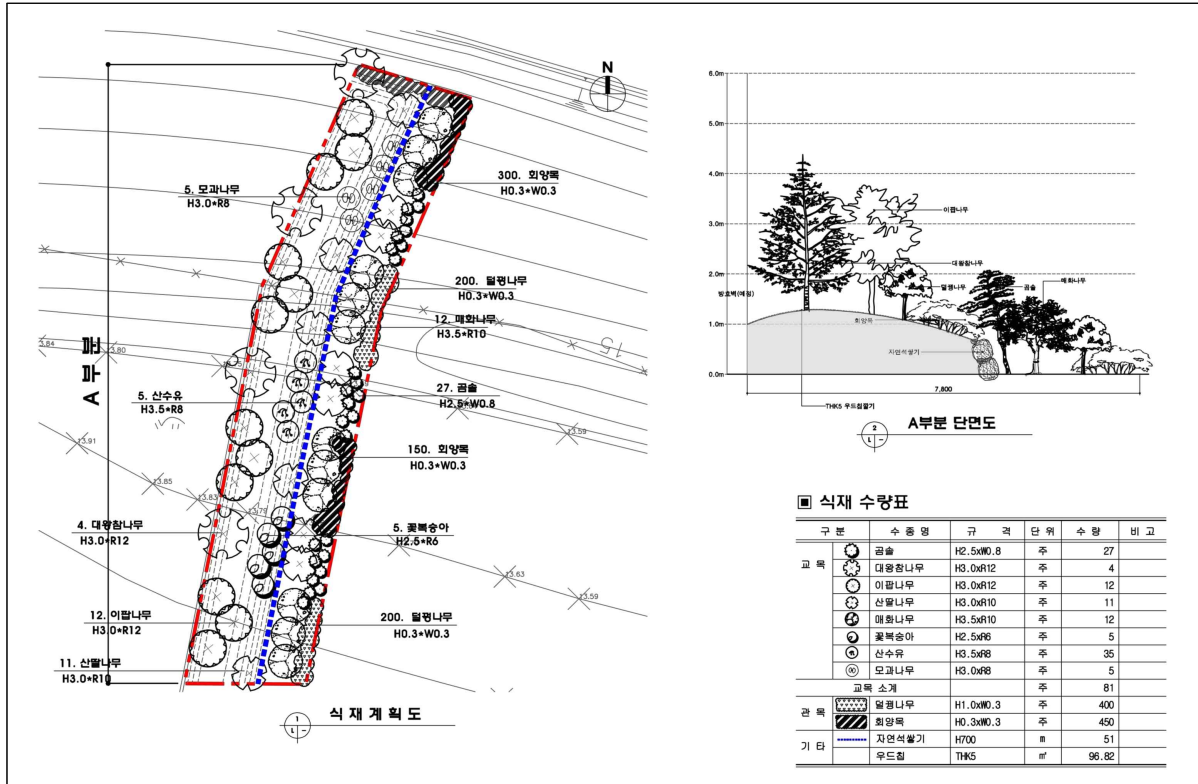
### 가. 사업의 목적

- 녹지를 조성하여 인근 저유시설과의 차폐를 통한 시설 간 간섭을 최소화 함으로써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 나. 녹지 조성계획

	공	종	단 위	수 량	비 고
1. 식재공	곰 솔(해 송)	H2.5 x R0.8	주	27	
	이 팍 나 무	H3.5 x R12	주	12	
	대 왕 참 나 무	H4.0 x R12	주	4	
	산 수 유	H2.5 x R8	주	35	
	모 과 난 무	H3.0 x R8	주	5	
	산 딸 나 무	H3.5 x R10	주	11	
	매 화 나 무	H3.5 x R10	주	12	
	꽃 복 송 아	H2.5 x R6	주	5	
	덜 평 나 무	H1.0 x W0.4	주	400	
	회 양 목	H0.3 x W0.3	주	450	
우 드 칩	THK2	m <sup>2</sup>	96.82		
2. 부대공	토 사	마운딩용	m <sup>3</sup>	200.9	
	흙 반 입	15km	m <sup>3</sup>	200.9	
	자 연 석 쌓 기	H700	m	51	
3. 자 재	토 양 개 량 제	20kg/포	포	203	
	삼발이지주목(소형)	φ50 x 1,800	조	81	
	삼발이지주목(대형)	φ60 x 2,700	조	92	

< 녹지 조성 계획도 >



다. 사업시행 방안

- 개발방식 : 민간개발후 기부채납
- 재원조달 : 시행자 주식회사 정원도시개발 100% 자체부담
- 총사업비 : 62,040,000원

[사업비산정]

공	종	소요자금(원)	자금조달방법	비고
순공사비	식재공	37,243,052	시행자자금	
	부대공	3,949,691		
	자재	510,300		
	재경비	14,696,957		
	합계	56,400,000		
부가세		5,640,000		
총공사비		62,040,000	전액 시행자자금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211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21. 7. 5. ~ 2021. 7. 19.(15일간)

### 2. 공고내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56노5066 외 18건(붙임 참조)		
	차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3, FAX 032-560-2793)		

### 3. 유의사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차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3)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1	56노5066	SM5	홍*성	2021.05.03
2	83가7930	포터 II (PORTER II)	김*태	2021.05.14
3	77다3557	그랜드 스타렉스(GRAND STAREX)	고*욱	2021.05.17
4	58무1965	싼타페(SANTAFE)	박*성	2021.05.18
5	43러6696	K7 하이브리드	박*성	2021.05.24
6	95도7104	봉고III 1톤	주식회사 경*글로벌특장	2021.05.28
7	02하4125	디스커버리 TD6	장*렌트카(주)	2021.05.28
8	48러0724	K5 하이브리드	서*기	2021.06.04
9	153호2661	G80	(주)엔*이씨이새인천 렌트카	2021.06.07
10	89버0609	포터 II (PORTER II)	윤*길	2021.06.08
11	32루4006	레이	윤*길	2021.06.08
12	89보4815	포터 II (PORTER II)	(주)비*블유엘	2021.06.09
13	인천34도4066	칼로스 1.5SOHC	김*순	2021.06.11
14	84어3987	포터 II (PORTER II)	이*우	2021.06.16
15	70어6997	그랜드 스타렉스(GRAND STAREX)	천*우	2021.06.16
16	46주4388	BMW 740d xDrive	엄*정	2021.06.22
17	37머5440	싼타페(SANTAFE)	송*섭	2021.06.23
18	인천35가6177	쏘나타III1.8DOHC	김*섭	2021.06.25
19	362우6182	모닝	안*자	2021.06.25